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896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4.

발 의 자:서일준ㆍ이상취ㆍ이헌승

김종양・김은혜・김 건

권영세 • 우재준 • 김선교

조배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.

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제도화하며,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·도지사에게이양하고자 함(안 제29조 및 제40조).

법률 제 호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해양수산부장관이"를 "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"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도시·군관리계획"을 "도시·군관리계획(전체 구역 중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하고,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와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은 시·도지사가 결정한다)"로 한다. 제40조 중 "해양수산부장관은"을 "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"으로, "있다"를 "있다(시·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혐의하여야 한다)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도시・군관리계획의 결정	제29조(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
권자) ① (생 략)	권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	②
호의 도시 · 군관리계획은 국토	
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. 다만,	
제4호의 도시·군관리계획은	
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.	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
	<u>사가</u>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	4
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	
도시 • 군관리계획	도시・군관리계획(전체 구역
	중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공
	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
	결정하고, 공유수면에 인접한
	토지와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
	공유수면은 시 · 도지사가 결
	<u> 정한다)</u>
제40조(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)	제40조(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)
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	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・도지
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	<u>사는</u>
아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	
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	
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	

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<u>있다</u>.

--- 있다(시·도지사가 결정하

-- <u>있다(시·도지사가 결정하</u> 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).